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진선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265

발의연월일: 2024. 7. 26.

발 의 자:진선미・박지원・임오경

황명선 • 윤종군 • 한정애

김한규 · 김성회 · 김문수

서영교 · 백승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 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 여야 함.

그런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 하나인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,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 용되었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2018년에 발생하 는 등 은행이 금리를 조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 었음.

이에 「은행법」 또는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 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,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 으로써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들 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3조제1항 본문 중 "계약서류"를 "계약서류(제2조제1호가목·라목에
따른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
거가 되는 담보,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계약서류의 제공의무) ①	제23조(계약서류의 제공의무) ①
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	
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	
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	
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	
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<u>계약서류</u> 를 금융소	<u>계약서류(제2조제1</u>
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	호가목・라목에 따른 대출의 계
야 한다. 다만, 계약내용 등이	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자율
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칠 우려	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
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	<u>담보,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</u>
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	<u> 포함한다)</u>
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.	,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